

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9년 7월 2일
- 회부일자 : 2009년 7월 8일

3. 제안이유

- 「학교보건법 시행령」 개정(대통령령 제20949호, 2008. 8. 4. 전부개정)에 따라 본 조례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"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"을 "같은 법 시행령 제7조"로 함
(안 제1조)

5. 검토의견

□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○ 각 지역교육청에서 설치·운영 중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「학교보건법 시행령」이 2008. 8. 4.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인용 조항인 "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"을 "같은 법 시행령 제7조"로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붙임 :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1부.